

잡지보도와 시민의 권익

이 경 자
경희대 교수

1. 논의의 범위 및 한계

최근 주요 일간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경쟁을 벌였던 제 3 공화국비화 연재는 그 이야기의 성격상 관사와 비난의 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 3 공화국 비화 연재는 그 이야기의 성격상, 또 이례적으로 각 주요 일간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거의 동시에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및 반응이 다양하였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오늘의 한국언론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보는 좋은 예가 되었다. 즉 언론보도의 찬반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언론이 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역할과 위치를 재양식할 수 있었고, 언론보도의 경쟁적 요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과 단점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제 3 공화국 이야기의 연재를 끝마치면서 주석을 붙인 한 일간신문의 추신은 현재 우리 언론의 시사적인 관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여 특히 눈길을 끌었다.

즉 『.....다만 대총이나마 약속대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상황판단이 달라진 것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인숙 사건 같은 것은 30 여명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역사의 정확한 기록의 의미보다는 정인숙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인권이 치명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 신문사의 입장은 한국 언론의 현재의 관심은 「역사의 정확한 기록」에 앞서 인권의 존중 · 보호에 있으며, 아울러 한국에서는 언론보도가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어 사회적 차원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1982년 2월 25일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시 원고 ·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함 등을

명시한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 등은 인권의 존중, 보호에 대한 사회적 · 제도적 관심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대적으로 취급되었던 몇몇의 사건보도(예를 들어 윤경화, 박상은 살인사건, 이윤상 유괴 살인사건 등)는 사건의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문제, 또 언론보도와 인권문제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론보도와 인권문제를 사회적 · 개인적 차원에서 고찰해보고 현재 한국의 언론보도와 인권문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인권이란 개념은 개인의 명예, 권리, 사생활권 등을 포함한 인간존엄의 권리라는 다분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특별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잡지와 인권문제이나, 이것을 논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우선 잡지만큼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다양한 매체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잡지의 종류만 하여도, 잡지가 발행되는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주간 · 월간 · 계간 등이 있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교양잡지 · 문예잡지 학술잡지 오락잡지 등이 있으며, 목표독자 계층에 따라 여성잡지 · 소년, 소녀잡지 · 대중잡지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약 2만 여종에 달하고 있는 잡지의 극히 일부만을 나열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잡지 매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잡지 매체를 총망라하여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성격의 잡지가 다양한 형태로 각계각층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이들 잡지가 사회 ·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 역시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잡지가 인권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의 성격이나, 형식 및 독자층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특히 연관성이 많으리라고 짐작되는 주간지와 최근 들어 급격한 센세이셔널리즘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여성지에 제한하여 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두번째 제한점은 잡지와 인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잡지를 방송 · 신문 등 다른 형태의 매체들과 명백히 구분하여 잡지만의 고유한 문제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잡지는 외형적으로 인쇄매체라는 점에서 우선 방송매체와 구분된다. 또한 같은 인쇄매체인 신문과도, 잡지는 신문에 비해 보통은 훨씬 긴 간격으로 출간되며, 뚜렷한 표지가 있고, 단순히 접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묶여있는 등의 특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잡지가 신문보다 긴 간격을 두고 출간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잡지는 보도내용의 신속성 · 시사성보다는 보도내용의 해설 심층보도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더 이상 잡지만의 고유특성이 못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의 성격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문제의 신속·정확한 보도의 필요 이외에도, 문제에 대한 해설과 심층보도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신문이나 방송 등 타 매체가 잡지의 이와 같은 특징을 도입하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앞에 언급한 제 3 공화국 이야기 연재가 신문에서 잡지적인 특징을 도입한 좋은 예이며, 미국 CBS 텔레비전의 「60 분(Sixty Minutes)」 KBS 텔레비전의 「뉴스 파노라마」 등은 흔히 뉴스 매거진이라 하여 텔레비전 보도 프로그램에서 잡지적인 요소를 도입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오락·연예 프로그램에 잡지화 경향도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는 많은 부분에서 신문의 잡지화·방송의 잡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매체간의 수용자 확보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각 매체의 특징이나 혹은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명확히 구분 짓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언론보도와 인권문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잡지도 분명히 매스미디어의 한 형태이니만큼 다른 형태의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각 매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에 차이를 보이는 등의 부분적이고 외형적인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잡지가 인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상당 부분은 잡지를 포함한 매스미디어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문제가 잡지의 특수성과 아울러 언급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언론보도와 인권 -사회적 차원-

현대를 매스커뮤니케이션시대라고 특징 지우는 중요한 근거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각종 사회적 영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다수인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데에 막대한 영향력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각종 매스미디어가 생활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에 의한 우발적·누적적 영향은 현재 가능한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된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일찌기 윈터 링프만은 현대인들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조성된 의사환경(pseudo environment)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머리속에 세상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주장하였다.¹⁾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상당부분 매스미디어에 의해 정의되고 재구성된 사회현실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현대인들은 직접적인 체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된 채로 매스미디어가 알려준 바에 의해 세상을 인식하고 확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 들이다. 세계의 정치가,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알게 되고, 또 상당부분의 우리의 사회적 행위는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파악되고 이해된 세상의 모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수용자들에게 사회현실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그 제작과정에서 반드시 취사선택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흔히 게이트키퍼(gate keeping)이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취사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고 어떤 것이 버려지며, 또 선택된 내용이 어떤 형태로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 곧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론이 주장하듯이 의식체계를 구조화시켜주는 결과가 된다.²⁾ 또한 장기적으로는 매스미디어가 특정 표제를 선택하여 강조해줌으로써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결과 현 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수준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점이 바로 많은 대중문화 비평가들이 우려하고, 비판하는 쟁점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의 매스미디어는 수용자들의 「마음에 지도를 그리는 자(the molder of the souls geography)」라고 지칭한 평론가 Michael Novak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매스미디어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보다 우선하여 수용자에 대한 책임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의 성격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의미 있는 맥락에서 세상을 알려주어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변환경을 정확하고 의미있게 파악하고 해석하게 함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매스미디어가 이와 같은 수용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주변환경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변화하는 현대 사회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안목을 흐려 놓았다고 했을 때 이는 곧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매스미디어에 의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예로 우리는 6.25 전쟁 당시의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비판의 소리를 종종 듣는다. 즉 이미 전세가 우리측에 상당히 불리하여 국군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우리에게 유래한 듯 보도하여, 이를 믿던 많은 국민들의 피난의 기회를 지연시켜 희생을 늘렸다고 듣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엄연히 매스미디어의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특히 각종 선거기관 중 정치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목격할 수 있다. 즉 선거기간중의 정치기사에서 독자들은 흔히 어떤 후보가 우세하다는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접하게 든다. 물론 그 예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추정되었고 보도되었는가는 심각하게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게이트 키퍼 과정이라 해도 무방할 것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예측보도는 그 선거에 참가한 입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가 우세함을 강조하여 줌으로써 승자의 편에 편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여 특정인에 대한 소위 밴드 웨곤효과(bandwagon effect)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여론조사가 매우 활발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윤리적 문제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가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의미 있는

맥락에서 보도하여야 하는 책임은 바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인권문제의 맥락에서도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언론보도와 인권 -개인적 차원-

흔히들 매스미디어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배우는 교실이라고 한다. 이 말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현대인들의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개인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사회현실을 파악하고 2)그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배우며, 3)어떤 가치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인가 하는 등 문화규범을 배우고, 4)나아가서 이들에 대처하는 방안을 배우게 된다. 사회학습이론가들에 의하면 매스미디어에서 보여 준 내용은 수용자들에게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매스미디어에서 보여 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내용상의 행동모형을 그대로 모방·재현하기로 하며,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를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또한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³⁾ 다시 말해서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지 못하며, 비판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는 수용자 계층일 수록 매스미디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내용의 질과, 선정적인 내용 및 보도의 경향이 문제가 되는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다. 경험의 폭이 넓고, 비판적인 능력과 안목이 확실한 수용자층에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것이 못될지 모르나, 경험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의 사회현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판적인 안목에 제한된 수용자층 (예를 들어 일부 청소년층, 부녀자층, 근로자층 등)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범죄사건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비슷한 수법의 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혹은 매스미디어의 특정 내용을 모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문제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특히 이와 같은 계층의 독자들에게 의해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주간지와 여성지 및 청소년잡지의 내용과 형식 및 보도방향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의미있고 정확하게 그들의 주변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쪽보다도 단순한 흥미위주의 다분히 선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에게 사회현실을 알려주고, 행동규범 등을 제시해 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그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양사회에서의 귀족, 한국사회에서의 양반 등이 전통사회에서의 신분에 의해 부여받은 사회적지위를 향유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지위부여의 기능 (status enforce function)을 하고 있다.⁴⁾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전통적 의미의 신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매스미디어에 의해 정의되고 창조된다. 매스미디어는 무명의 개인을 하루아침에 사회적 명사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지위부여능력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이후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새로이 사회적 지위를 부여 받은 소위 「미디어 영웅」들의 출현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과거의 사회적 영웅은 링컨이나 이순신 장군 등 한 개인의 비범한 자질이나, 그들의 두드러진 사회적 공헌에 의해 정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상당 부분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 영화배우, 탈랜트, 가수, 운동선수 등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매스미디어가 이와 같이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친 것과 동시에 그들의 명예나 권리·사생활을 침해하는 능력 역시 갖고 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자신을 남에게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적인 욕구와 동시에 남에 의한 사회적인 평가를 중요시하는 일면 이율배반적인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다. 전자가 사생활 보호의 욕구이고 후자가 명예보호의 욕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명예와 사생활권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제 9 조에서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0 조 2 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언론·출판에 의해 이를 침해 당했을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개인의 명예·권리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간들의 관심을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듯 하다. 성경의 10 계명에도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고대 노르만 법에서도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개인을 도둑이나 살인자라 불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손으로 코를 잡고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공개적으로 자백하여야 한다」라고⁶⁾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각종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발달하고 수용자층이 확대되었으며, 자유주의언론관에 기초한 서구언론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정도(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로부터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사생활권·명예 등 인권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자유주의국가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인권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제도의 근본 논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언론자유와 필요성과,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인권의 보호라는 두 개의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론 자유와 개인이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귀결되며, 이것이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언론자유와 사생활보호를 동시에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도 언론과 인권침해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자주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현상이 곧 문제의 미묘함을 말해주고 있다.

4. 잡지와 타인의 명예 · 권리 -현황 및 문제점-

언론보도와 인권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특별히 잡지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잡지가 매스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신문 · 방송등과 함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잡지매체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잡지는 일정 간격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신문 · 방송에 비해 신속성 시사성 등이 뒤떨어지는 반면 내용의 해설 및 심층보도가 가능하므로, 신문방송보도에 의해 야기된 호기심을 잡지의 심층보도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독자층에 어필(appeal)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잡지가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신속성 · 시사성 등이 뒤떨어지고 있으나 단행본책에 비하면 잡지는 여전히 적시성과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 단행본 책의 효과가 단발효과라면 잡지의 효과는 다분히 누적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도 보존성이 제한되어 있어 내용이 방송되는 특정시간 이후에 같은 내용에 대한 재접촉이 어렵고 신문 역시 대부분의 경우 다음 신문이 도착되면 버려지는데 비해 잡지는 비교적 오래 독자 곁에 머물러 있어 타매체에 비해 매체생명이 길기 때문에 잡지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이 가능하며 아울러 한 카피(copy)에 대한 구독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잡지의 특성은 잡지내용의 사회적 · 개인적 영향력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잡지와 인권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81 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현황 보고에 따르면, 언론중재 신청사건이 총 24 건 이었고 그 중 2 건이 주간잡지가 대상이 된 신청이었으며 중재의 내용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로 나타나 있다. 중재를 요구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의 근원은 허위 조작왜곡보도 등 결국 내용의 부정확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의 부정확성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소위 객관적 부정확성(objective error)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부정확성(subjectiveerror)로써⁶⁾ 이 두 가지의 부정확성은 모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 사생활침해 등 인권문제의 주요 근원이 되고 있다. 보도내용의 객관적 부정확성이라 함은 사실에 대한 부정확성으로써 예를 들어 사랑의 이름 · 장소 · 기관명 · 날자 · 나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부정확한 전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 권리 등을 손상할 수 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얼마전 모 영자신문의 모

인사 사망기사 중 탄 사람의 사진이 실렸던 경우도 보도의 객관적 부정확성의 예가 되며, 기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오보가 심각하게 타인의 인권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

주관적 부정확성은 일명 의미의 부정확성(error in meaning)이고도 하며 이는 내용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혹은 은폐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의미의 정확성이라는 문제는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로써 자주 거론되는 기사의 공정성 문제도 결국은 의미의 정확성에 귀결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타인의 명예·권리등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시되고 있는 왜곡보도 및 문제의 핵심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사항을 과장보도하는 등의 센세이셔널리즘 역시 의미의 부정확성이라는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두 주간잡지를 상대로 한 중재 신청자들의 주장 (사건번호 '81 서울중재 7, '81 서울중재 20) 역시 이와 같은 의미의 부정확성에 의한 명예훼손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잡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보호내용의 의미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언론보도(잡지의 경우)에 의한 타인의 명예·권리·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의 근원이 많은 경우 보도내용의 부정확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잡지에 의한 인권문제의 유형 및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잡지 (반드시 잡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에 의한 인권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취재·보도의 대상이 된 자의 명예·권리의 문제이고, 둘째는 글을 쓴 필자, 인터뷰나 좌담 등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명예·권리문제이다. 아마도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타인의 명예·권리침해문제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것은 첫번째 경우인 취재·보도 대상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앞에 이미 언급된 중재신청사건인 가수 심모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나 ('81 서울중재 7), 대구 노모여민의 피살기사('81 서울중재 20)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흔히 대중 오락경향의 주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명예·사생활 침해의 대상은 대부분 연예인이거나 혹은 소위 유명인들이다. 최근 발간된 주간지의 내용 중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사들 중에는 전 대학교수 김모씨·간통사건, 처녀가수 김모양의 가수 겸 매니저인 김모씨와 사이의 사생아 이야기, 이미 언론보도와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여대생 살인사건의 박양, 장군, 정군간의 삼각관계기사, 이미 언론중재 신청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수 심모양에 대한 스타탄생야화 및 위의 기사들과 성격을 조금 달리하나 탈렌트 장모양과 가수 정모양의 「소문」과 그에 관한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사들은 그 나름대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의 가능성(혹은 요소를)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전직교수 김모씨에 관한 기사는 김씨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수 김모양의 경우 이야기 속의 다른 상대방은 이미 사자이기에 말이 없고 더우기 사자의 부인이나 가족이

생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또 여대생 살해사건의 관련자들간의 애정관계 기사에서는 이미 충분히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사생활 부분을 재삼 노출시켰다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장모군의 사생활부분이 재삼 공개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들 기사의 내용은 개인의 명예 · 사생활 침해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사내용이 정말 사생활침해고 명예훼손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보도의 내용만 갖고 인상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명예훼손이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 또 사생활권이란 「본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에 관한 것을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라고 Phelps 와 Hamilton 은 정의하고 있다.⁷⁾ 그런데 미국의 경우 언론보도와 명예훼손관계의 판례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여부를 가리는 데는 적어도 몇 가지 기준이 있는 듯 하다. 즉 Zenger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① 내용이 사실(truth)인가 하는 점, 각 주법들이 명시하고 있듯이 ② 내용이 공평한 논평(fair comment and criticism)인가 하는 점, 1979 년 Herbert 대 Lando 사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③ 내용에 고의적인 악의성(malice)이 내재되어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위에 언급한 주간지 기사들이 과연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우선 기사내용의 진실성 여부 · 공정성 여부 · 고의적인 악의성 개재 여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사의 내용이 본인의 동의 하에 보도되었는지 여부로 문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취재기자과 취재 대상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 권리침해 등의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연예인들이 대상이 된 내용인 경우는 특히 그 기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보도된 것인지 아닌지를 제 3 자가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상당부분의 연예인 사생활 기사에 관한 잡지기사들은 개인적인 퍼블리시티 성격이 다분히 개재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잡지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기에 쉽지가 않다. 둘째 잡지의 취재보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권리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잡지에 글을 실는 필자나, 인터뷰 · 좌담 등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 권리문제이다.

얼마 전 모 여성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잡지의 특집 기획에 글을 썼던 한 현직 언론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즉 여성이 자기생활을 갖는 것, 특히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한 글은 결국 잡지 속에서 글 중간에 「부인이 핸드백을 메고 뒷밭길질로 출입문을 탕 차면서 집을 나서는 뒷전에 앞치마를 두르고 우는 아기를 안은 남편이 난감하게 서 있는」 만화컷이 들어 가있는 모양으로 출판되었으며 더우기 신간을 소개하는 일간신문광고에는 필자의 이름과 함께 문제의 만화컷이 함께 소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 필자에 대한 인격과 품위의 훼손일 뿐 아니라 필자의 가족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이다. 필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는 이와 같이 흔히 편집과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써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

혹은 컷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편집자의 의도대로 결정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센세이셔널하게 불힘으로서 필자의 명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또는 필자와의 상의없이 글의 특정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고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변형시키는 경우도 결과적으로 철자의 품격이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예가 드물지 않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인터뷰나 좌담기사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인터뷰나 좌담의 내용을 확대, 혹은 축소하여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의도가 부정확하게 보도되어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이 인격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와 같은 점도 언론 보도와 타인의 명예·권리라는 차원에서 재인식되어야 하며, 아울러 잡지의 취재 및 편집의 자세, 방향에 대한 재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개선방향 및 제언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에 대한 문제의 개선은 첫째,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또 각종 언론관계 윤리강령 및 심의기준 세칙에서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기본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과 타인의 명예·권리침해 문제는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명제가 사생활의 보호라는 기본명제 사이의 균형의문제로서 법으로만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알았다. 사실 현재의 각종 언론관계 윤리규정이나 심의규정에 의하면, 우리가주간지에서 흔히 읽는 내용이나, 사진 등은 모두가 충분히 규제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지들의 일부 내용이 그것도 전면광고로 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것도 규제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잡지에 피임법이 소개되는가 하면 화장법이 소개되며, 선정적인 사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도서잡지윤리강령이나 잡지 심의기준에 의하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 실제로 이와 같은 법과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이 필요에 따라 경고·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내용의 잡지를 대하고 있음은 법과 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듯하다.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기능은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에게 단지 심리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왕에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에야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최고의 기준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잡지에 의해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지나친 흥미위주의 선정주의적인 경향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종사자들(경영인을 포함한) 개개인의 전문인 의식과 윤리관에 의한 문제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인간은 어느 타인에 의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못지 않게, 자기자신에 의한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긍심이 중요하다. 언론 종사자들 모두가 자기 가족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내용, 자기 자녀들에게 읽히기 꺼리는 내용의 기사를 쓰지 않을 자긍심으로 잡지를 만들면 지나친 흥미위주의 선정주의나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간잡지의 경우 모두가 언론기관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며, 주관잡지 종사자들 역시 단순한 가십 기자가 아니고 일간지와 주간지간의 인적 교류가 통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높은 전문인의식에 입각한 문제의 개선을 기대해볼 만하다. 생산자들이 제품을 과대 허위광고하여, 그에 대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언론은 허위 · 과대광고를 공정거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고발하고, 소비자는 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계몽한다. 같은 논리로 만약 잡지에서 세상의 일면을 혹은 특정 가치관을 과대 · 허위 보도하여 이를 읽는 독자들이 (특히 경험의 세계가 제한되었거나 비판적 안목이 성숙되지 못한 계층)이해를 입었다면(예를 들어 범죄나 비행 등을 저질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면 언론은 이러한 계층에 대하여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윤리적 차원에서의 언론과 인권문제의 개선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언론종사자들 개재인의 전문인 의식과 윤리관에 의한 자율적인 개선은 결국 외부에 의한 통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번째 개선의 방향은 독자들의 비판적 안목에 있다. 자유경쟁 경제체제에서의 매체의 생사는 시장기능에 달려있다. 즉 독자들이 찾지 않는 잡지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정적이고,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내용보다는 흥미위주의 소모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을 왜곡보도하는 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용납하는 독자층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오늘날의 잡지현황의 책임의 상당 부분은 우리 독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언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매스미디어 소비교육이 중요한 사회교육의 일부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W Lippmann, Opinion, (N. Y, macmillan, 1922)

2) M. McCombs and D. L. 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 O. Q. 36 ; 176-187

3)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7)

4) P.Lazarsfeld and R.merton, "Mass Communication:Popular Taste and Organized Social action", in W. Schramm(ed) Mass Communication, (Urbana ; Univ. of Ill.. Press, 1960)

5) W.S. Holdsworth, "Defama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Law Quarterly Review, 40 : 302-304, 1924.

6) G. C. Lawrence and D. L. Grey,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 Q. 46 ; 754-57

7) R. Phelps and E. Hamilton, Libel, (N. Y. ; Dover, 1978) P. 380